

성신학원 2021학년도 제8차 이사회 회의록

| | | | |
|------|----|-------|----|
| 이사정수 | 8인 | 재적이사수 | 8인 |
| 감사정수 | 2인 | 재적감사수 | 2인 |

1. 일 시 : 2022년 1월 20일(목) 17:00~19:3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1월 12일)

2.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2 성신여자대학교 행정관 2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 임원

이사(6인) : 고철환, 김향기, 김현숙, 정연순, 이상희, 이남규

감사(2인) : 김상만, 이정환

◦ 불참 임원

이사(2인) : 이상용, 김정인

4. 안 건

가. 안건

제1호 의안 :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2학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2호 의안 :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3호 의안 :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4호 의안 : 대학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5호 의안 : 개방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6호 의안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7호 의안 : 소송에 관한 사항(안)

제8호 의안 : 성신여자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
에 관한 사항(안)

나. 기타 논의 및 보고사항

- 1) 「사학혁신 지원사업」 감사심의·자문위원 및 시민감사관 위촉 결과 보고
- 2) 2021학년도 「사학혁신 지원사업」 법인사무국 예산 변경 최종(안)

2022. 1. 20. 이경미 010-5237-0027

- 3) 법인운영의 책무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위한 타 법인 정관 사례조사
- 4) 기타 논의 사항

5. 회의 내용

가. 개회

- 의장은 간사로부터 재적이사 8인 중 5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다는 성원보고를 받고, 성신학원 정관에 따라 2021학년도 제8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인과 대학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예산 이사회에 대학 구성원이 참관하게 되었음을 말하다. 참관인은 총 6분으로 교수대의원회에서 추천한 성신여대 박홍준 교수, 성신여대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정민기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정구 노동조합 총무부장,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김지원 총학생회장, 박서희 부총학생회장, 동문에서 추천한 김선희 총동창회장을 소개하다.

나. 안건심의

- 1) 제1호 의안 :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2학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1호 의안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2학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각 기관별로 예산안을 보고하도록 하다.
 - 성신유치원 권정윤 원장과 정지연 원감, 성신초등학교 신은주 교장과 이은경 행정실장, 성신여자중학교 최영혜 교장과 박선희 행정실장, 성신여자고등학교 박현성 교장과 이근호 행정실장, 성신여자대학교 류준경 기획정보처장과 김선영 예산팀장, 성신학원 법인사무국 윤광용 팀장이 출석하여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2학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각급학교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다.

(17시 15분 정연순 이사 출석)

[*정연순*] 이 *정연순* 2

- 각 기관별 참석자는 2021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2021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중 성신유치원은 당초예산 총액 965,182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177,285천원 감소한 787,897천원, 성신초등학교는 당초예산 총액 4,065,131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1,178,242천원 증가한 5,243,373천원, 성신여자중학교는 당초 예산 총액 5,613,692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308,227천원 증가한 5,921,919천원, 성신여자고등학교는 당초예산 총액 7,466,134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872,835천원 증가한 8,338,969천원, 성신여자대학교는 당초예산 총액 125,470,018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6,509,635천원 감소한 118,960,383천원, 성신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사학연금법정부담전출금 최대 60,000천원, 2021학년도 「사학혁신 지원 사업」 예산 108,200,000원을 포함하여, 당초예산 총액 4,008,805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124,643천원 증가한 4,133,448천원으로 편성하기로 하다.
- 법인사무국 윤광용 팀장은 성신학원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1월 18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예산변경을 신청한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 이사회 다음 날인 2022년 1월 2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예산변경(안)이 최종 승인 및 통보될 예정이므로 일부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따라서 일부 예산변경 발생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전용하여 집행하고, 예비비 전용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9차 법인 이사회(2월말 경)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예정임을 설명하다.
- 이어서 각 기관별 참석자는 2022학년도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2022학년도 예산 중 성신유치원은 전년도 예산 총액 787,897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28,064천원 증가한 815,961천원, 성신초등학교는 전년도 예산 총액 5,243,373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723,252천원 감소한 4,520,121천원, 성신여자중학교는 전년도 예산 총액 5,921,919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1,537,152천원 감소한

| | | | |
|---------------|------------|----------|----------|
| <i>Nov 25</i> | <i>이명희</i> | <i>.</i> | <i>~</i> |
|---------------|------------|----------|----------|

4,384,767천원, 성신여자고등학교는 전년도 예산 총액 8,338,969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2,477,268천원 감소한 5,861,701천원, 성신여자대학교는 전년도 예산 총액 118,960,383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6,388,208천원 증가한 125,348,591천원으로 편성(임의건축기금에서 임의특정목적기금(교직원보수지원기금)으로 40억원 용도변경 포함), 성신학원은 전년도 예산 총액 4,133,448천원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39,006천원 증가한 4,172,454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포하다.

- 이남규 이사는 코로나19 시대에 장학금 지원에 대한 학생 의견을 물자, 참관인 김지원 총학생회장은 성신여대는 전국에서 장학금 지급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하다.
- 참관인 김선희 총동문회장은 학생 자연감소 추세 시대에 있어 대학의 적극적인 첨단학과 신설과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해 등록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다. 또한, 각급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설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이다.
- 의장이 제1호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물자, 원안대로 각 기관별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2학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제1호 안건인 대학 및 법인의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2학년도 예산 심의가 최종 종료되었기에 참관인 6분은 퇴장하고, 2022년 4월에 예정된 결산 이사회에서 다시 참관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의장은 대학 구성원만 예·결산 이사회에 참관할 것이 아니라, 금년 4월 결산 이사회부터는 유·초·중·고등학교의 구성원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각급학교에 참관 구성원 인원을 요청하겠다는 의견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2) 제2호 의안 :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2호 의안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

| | | | |
|------|-----|---|----|
| 2021 | 이상희 | . | 승인 |
|------|-----|---|----|

원 김도형 법인사무국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불임의 교원 임용자 명단에 따른 성신유치원 신규 교사 채용 및 휴직, 성신초등학교 신규 교사 채용 및 휴·복직, 성신여자중학교 복직, 성신여자고등학교 정년퇴직, 파견 및 휴·복직 사항을 설명하다. 성신유치원 2022년 3월 1일자

의 신규 임용과

교사의 육아휴직

전에 대해서 설명하

고 의결을 요청하다. 성신초등학교 2022년 3월 1일자

교사의 신

규 임용과

교사와

교사의 복직,

교사와

교

사의 육아휴직

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성신여자중학교 2022년 3월 1일자

교사의 복직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성신여자고등학교 2022년 2월 28일자

교사의 정년퇴직, 2022년 3월 1일자

교사 와

교사 의 휴직

교사의 서울교

육연구년 특별연수 파견

, 교사,

교사,

교사의 복

직 전에 대해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불임의 교원 임용자 명단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2022년 3월 1일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컴퓨터공학과 조교수의 임용 포기 의사로 인해 신규 임용을 취소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 의장이 제2호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성신유치원장, 성신초등학교장, 성신여자중학교장, 성신여자고등학교장, 성신여자대학교총장의 제청에 따라 원안대로 불임과 같이 임용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3) 제3호 의안 :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3호 의안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김도형 법인사무국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불임자료의 정관 제·개정 신·구 비교표에 따라, 제·개정

| | | | |
|-------|-----|---|----|
| · 김도형 | 이명우 | 0 | 승인 |
|-------|-----|---|----|

사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항의 개정(2020.09.25.)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조교' 추가가 필요하며, 대학이 공식적인 '조교' 직함을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 법령 개정의 목적(대학원생 권리 보호)을 고려하고 대학 운영과정에 대한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자,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2021.12.29.)에서 학생(대학원생) 평의원 1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다. 따라서 정관 제95조의3(평의원회의 구성)에 학생 평의원 1인 추가하고, 정관 제95조의4(평의원의 위촉)에 학생 평의원 중 1인을 일반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음을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안)에 근거하여(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8934, 2021.12.31.), 정관 제103조(정원)를 서울시교육청의 사무직원 정원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성신여자중학교 및 성신여자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각 1명 추가 및 직급 조정 등)을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로연수제도 시행 계획」(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6024, 2021.11.23.)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로연수 운영 방안 시행 알림」(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6852, 2021.12.6.)에 근거하여, 정관 제87조의3(공로연수)을 신설하여 중·고등학교 사무직원 중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 퇴직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아울러 이번 제·개정 정관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나, 경과조치로서 제94조의3와 제94조의4는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제95조의3 및 제95조의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학평의원회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을 따르고, 제103조(정원)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 김향기 이사는 제정은 정관 전체를 새롭게 만들 때이며 정관 내에 일부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통틀어 개정이라 하므로, 안건의 제목은 '정관 개



정에 관한 사항(안)'이 타당하다 말하다. 의장은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를 구하고 본 안건의 제목을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안)'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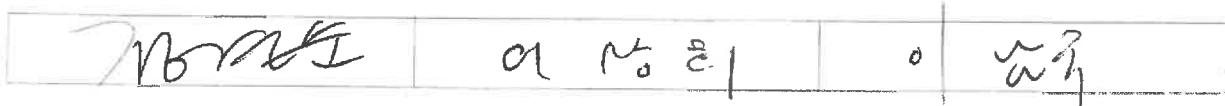
- 의장이 제3호 안건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문자, 기준 원안대로 정관을 제·개정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4) 제4호 의안 : 대학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의장은 제4호 의안 대학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성신학원 김도형 법인사무국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이사회 불임자료의 대학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사항 신구 비교표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문단위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수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교직원 보수 규정 제31조의3(외국인학생지도수당)을 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 의장이 제4호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문자,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5) 제5호 의안 : 개방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5호 의안 개방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김도형 법인사무국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학교법인 성신학원 감사의 임기가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선임될 신임 감사는 교육부의 「학교법인 운영[임원] 업무 안내」의 개방이사 선임 절차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고 설명하다. 추천감사의 경우도 개방이사 선임절차와 동일하나, 개방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는데 비해 추천감사는 단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해당 추천자를 선임하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다. 향후 절차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감사를 단수 추천하면 2월 22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감사선임 의결이 필요하



나,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추천감사는 단수 추천을 받아 그대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 결의를 미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하다. 따라서 본 이사회에서는 향후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 한 추천감사에 대해 개방감사로 선임한다는 의결을 구한다고 설명하다.

- 의장이 제5호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6) 제6호 의안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6호 의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김도형 법인사무국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2022년 4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감사인 이정환 감사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해서 성신학원 정관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및 제24조의3(추천위원회)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4인을 추천해야함을 설명하고,

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제6호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을 추천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7) 제7호 의안 : 소송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7호 의안 소송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김도형 법인사무국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7/17/2021

이상희

+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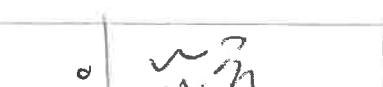
Marsal ol Nézí o | vəθ̩

8) 제8호 의안 : 성신여자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8호 의안 성신여자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김도형 법인사무국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제11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및 선거 관리 규정(이하 선거 규정) 제정 당시, 동 규정은 11대 총장 후보자 선거에 한정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제12대 이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성신학원 정관 제43조(임용) 제2항, 그리고 이사장 및 4주체(교수, 직원, 학생, 동창) 대표 간의 '총장후보 조기선거 간담회(2021년 11월 25일)'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4주체 합의에 의한 총장후보자 선거 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법인사무국장은 불임파일의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 관리 규정 개정사항 신·구 비교표에 따라, 대학 4주체의 합의로 최종 도출된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 의장이 제8호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다. 기타 논의 및 보고사항

- 법인사무국장은 「사학혁신 지원사업」 진행 경과보고 및 법인 과제 수행을 위한 논의를 불임 파일에 근거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학교법인 성신학원 및 대학의 「감사심의·자문위원」 및 「시민감사관」 위촉 결과에 대해 보고하다.
 - ① [법인 자체혁신] 법인(대학) 내부 감사기구에 의한 정기·상시 감사제

  . 

도 정착을 위한, 「감사심의자문위원」, 「시민감사관」 위촉 ※ 별첨5 참조

- 일시 및 장소: 2022년 1월 10일(월) 14:00 부터(성신관 808호 대회
의실 및 행정관 209호 회의실)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심의자문위원 8명, 시민감사관 11명 위촉
- 사학혁신지원사업, 학교법인 및 대학, 감사 제도 등 소개하고, 제1회
감사심의를 통해 법인 및 대학 3개년 정기 감사 기본 계획 심의·확정
- 자체감사제도 및 사학혁신지원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감
사관의 교육을 통해 대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사 전문성을 증진
시켰음
- 이사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보고내용에 동의하
고 이에 따라 법인과 대학의 내부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2021학년도 「사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변경 최종(안)에
대해 보고하다.

② 2021학년도 「사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변경 최종(안) ※ 별첨6,7 참조

- 사학혁신 지원사업 법인과제 수행을 위한 이사회 보고 및 논의시 이
사회 운영비 집행예산(참석수당 및 회의비) 11,400,000원 증액 반영
함(이사회 개최 회수 증가(3회 → 5회))
- 사학혁신 지원사업 자연에 따른 법인 채용 변호사 인건비 실 근무기
간에 따른 11,400,000원 감액 반영함
- 사학혁신 지원사업 자연에 따른 법인 채용 행정직 인건비 실 근무기
간에 따른 6,600,000원 감액 반영함
- 사학혁신 지원사업 과제 수행을 위한 법인사무국 운영비(회의비 및
여비교통비) 5,000,000원 감액 반영함
- 사학혁신 지원사업 과제 수행을 위한 법인사무국 비품(PC 및 데스크
등) 구입 11,600,000원 증액 반영함
- 상기 예산 변경(안)을 2022년 1월 18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
였으며, 2022년 1월 2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예산 변경(안)에 대
해 최종 승인 및 통보될 예정임. 따라서 이사회 개최 후, 예산변경에
일부 변경이 발생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

| | | |
|--|-----|-----|
| | 이명희 | 기증자 |
|--|-----|-----|

에 편성된 예비비를 전용하여 집행하고, 예비비 전용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9차 법인 이사회(2월말 경)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예정임

- 이사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보고내용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기로 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인 정관 개정을 위해 타 법인의 정관 사례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다.
- ③ [법인 운영의 책무성·공공성] 법인 정관 개정을 위한 타 법인 정관 사례 조사결과 보고 ※ 별첨8,9 참조
- 「사학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인 운영의 책무성·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정관 개정을 위한 타 학교법인(학원)의 운영 사례 조사
 - '㉠개방이사를 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적 포함,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에 대한 이사장 제한,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이사와 감사 상호간 친족제한, ㉣이사회 구성 시 성비 고려'를 법인 정관에 반영하기 위해, 이에 대한 타 법인(숙명학원 등 총 8개 학교법인) 정관의 명문화 여부를 비교 및 조사함
 -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제한, 임원 성비)에 대해서는 타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임원 상호 간(감사 간, 이사와 감사 간)의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타 학교법인에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법인 이사의 징계위원 포함은 명문화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이사의 자격(개방이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화하지 않고 있음
 - 상기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월말까지 법인사무국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내부 연구·검토 보고서를 최종 작성하여 한국사학 진흥재단에 성과지표로 제출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임
- 성신학원 김도형 법인사무국장은 법인에 해당되는 과제가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검토 및 논

2022년 2월말까지
이 _ M 월 . 0 | 2022

의 과정을 거쳐 「사학혁신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다.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는 정연순 이사, 이상희 이사, 이남규 이사 3인으로 정하기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마. 폐회

- 의장은 다른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19시 30분)

2022년 1월 20일

기록자 : 김 도 형

위 회의록 내용을 확인함.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 사 장 고철환

고철환

이 사 김향기

이 사 김현숙

이 사 이상용

이 사 김정인

이 사 정연순

이 사 이상희

이 사 이남규

감 사 김상만

감 사 이정환

이상희

이상희

이남규